

2025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I . 제안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 제안사유

- '25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의 확정통보 및 2024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5년 편성액 대비 172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본 예산 세출사업 중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과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사업은 설계기간 연장으로 금년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감액하고
- 또한, 119항공대 노후 소방헬기(서울 1호기) 및 수난구조대 노후 소방선박(서울 702호)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금·중도금·잔금 지급비율을 조정하면서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외 자체재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편성 부족분 중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감액하여 보전함.
-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 확정통보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소방헬기 교체사업 및 일반수요분을 추가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여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특별
시장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1,001,176	1,011,548	△ 10,372	△ 1.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1,001,176	1,011,548	△ 10,372	△ 1.0

나. 세출예산(총계)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1,975,563	1,979,138	△ 3,575	△ 0.2
일반회계	974,387	967,590	6,797	0.7
특별회계	1,001,176	1,011,548	△ 10,372	△ 1.0

2.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해당 없음

2) 소방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1,001,176	1,011,548	△ 10,372	△ 1.0
세외수입	2,705	2,705	-	-
국고보조금등	3,054	3,054	-	-
보전수입등	13,575	30,944	△ 17,369	△ 56.1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7,100	6,900	200	2.9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974,742	967,945	6,797	0.7
기타회계전입금	974,387	967,590	6,797	0.7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291,276	291,155	121	0.04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일반수요)	30,338	29,115	1,222	4.2
일반회계전입금	652,773	647,319	5,454	0.8
예탁금및예수금	355	355	-	-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974,742	967,945	6,797	0.7
일 반 회 계	행 정 운 영 경 비	0	0	0	0
	재 무 활 동	974,742	967,945	6,797	0.7
	소 방 특 별 회 계	974,742	967,945	6,797	0.7
	일 반 전 출 금				
	국 고 보 조 금 반 납	0	0	0	0
정 책 사 업 비		0	0	0	0

2) 소방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001,176	1,011,548	△10,372	△1.0
행 정 운 영 경 비		809,608	809,608	-	-
재 무 활 동		1,045	4,557	△3,512	△77.1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850	4,557	△3,707	△81.3
	국 고 보 조 금 반 납	195	-	195	100
정 책 사 업 비		189,458	196,318	△6,860	△3.5
예 비 비		1,065	1,065	-	-

3. 회계별 사업내역

가. 일반회계 : 해당 없음

나. 소방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 : 백 만 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19,448	29,820	△ 10,372		
계속사업	가예19년전센터 이전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감액)	548	2,024	△ 1,476	BF예비인증 심의 지연으로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25. 3월 ⇒ 7월) 되면서 금번 회계연도 공사기간이 줄어 시 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4억 76백 만원 감액편성	P.211
	소방학교실채 훈장간립 (시설비, 감리비 감액)	5,578	6,862	△ 1,284	VE(설계경제성 검토) 등 심의 시 설계 보완 및 관계기관 협의 지 연으로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25. 2월 ⇒ 6월) 되면서 금번 회계연도 공 사기간이 줄어 시설비 및 감리비 12 억 84백만원을 감액편성	P.216
	119항공대 운영 (노후 소방헬기 교체)	9,343	11,643	△ 2,300	(증액)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가 '24년에 7억원 감액 교부되었고, 이 중 2억원이 '25년에 추가 교부되어 증액편성 (감액)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연 차별 대금지급 비율 조정에 따라 '25 년 본예산 중 자체재원 전액인 25억 원을 감액편성	P.221
	수난구조대 운영 (노후 소방선박 교체)	2,934	4,734	△ 1,800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연차별 대 금지급 비율 조정에 따라 '25년 본예 산 중 자체재원 자산취득비 및 감리 비 18억원을 감액편성	P.226
	국고보조금 반환금	195	0	195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1억 95 백만원 증액편성(법정 의무경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	4,557	△ 3,707	세입 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의 '25년 편성액 대비 부족액 일 부(37억 7백만원)을 통합재정안정 화기금에서 감액편성	-

IV. 검토의견

1. 개 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 해당 없음.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된 9,743억 87백만원임.

2) 소방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된 1조 11억 76백만원임.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된 1조 11억 76백만원임.

- 금회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9,675억 90백만원 대비 0.7% 증액(67억 97백만원)된 9,743억 87백만원임.
- 소방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14억 22백만원(특수수요분 2억 원, 일반수요분 12억 22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21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4억 5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 순세계잉여금 172억 2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5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조 115억 48백만원 대비 1.0% 감액(△103억 72백만원)된 1조 11억 76백만원이며,
- 세출은 순계예산¹⁾규모로 기정예산 1조 115억 48백만원 대비 1.0% 감액(△103억 72백만원)된 1조 11억 76백만원임.

1)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2. 사업별 검토 의견

가. 「소방특별회계」 개요

-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19.12.10.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이하, '소방회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1.1.1.부터 시행중에 있고 서울시는 해당 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1.3.25.)하여 운영 중임.
-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²⁾ 중 서울시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표] 소방특별회계 세입 구조 현황

구 분	내 용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목적(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과세대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소방안전교부세	-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퍼센트(소방인건비 25%, 소방분 사업비 15%, 안전분 사업비 5%)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함. - 전국 자치단체 재정상황, 특수소요 등을 고려하여 배분되어지기 때문에 서울시로 배정되는 예산에는 매년 차이가 발생함. - 서울시로 배정된 예산의 75%는 소방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됨.
일반회계전입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지원 예산
국고보조금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소방보조 인력양성 및 운영 등 9개 사업('25년 기준)에 보조
세외수입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등 자체수입

2)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 재원)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 재원으로 함.

-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이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인건비로의 과도한 전입을 제한하기 위해 ‘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소방정책사업비로 사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한도 이상의 소방정책사업비 확보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³⁾.
- 다음으로, 소방안전교부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교부되는 재원은 서울시에서 소방 인건비에 25%를 두고 나머지 20% 중 소방사업 분야에 15% 이상, 안전사업 분야에 5% 이하의 비율로 편성하고 있음.⁴⁾

3) ※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 3. (생략)

4)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

[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재원 개요

구 분		비 율	내 용
소방안전교부세		45%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결산에 따른 교부세의 차액을 더한 것을 말함.
	소방인력 인건비	25%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같은 조 제 2항의 후단에서는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 하도록 함
	소방분야 사업비	15%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준의 소방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40%-25% = 15%)
	안전분야 사업비	5%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

[표]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서울시 교부액 현황

(단위 : 천원)

인력운용(25%)	소방·안전사업비(20%=소방분야 15% + 안전분야 5%)				
소방공무원 인건비	일반수요(25,207,568)		특수수요(7,300,000)		
11,431,928	15%(소방)	5%(안전)	소방헬기	소방정	안전체험관
	18,905,676	6,301,892	5,200,000	1,900,000	200,000

○ 또한, 「소방회계법」 제4조⁵⁾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세출을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금회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추정안의 소방특별회계 세출 편성구조를 살펴보면, 세출 규모가 총 1조 11억 76백 만원으로 인건비 계정에 7,573억 20백 만원, 정책사업비 계정에 2,438억 56백 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참조)

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5)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 세입 : 1,001,17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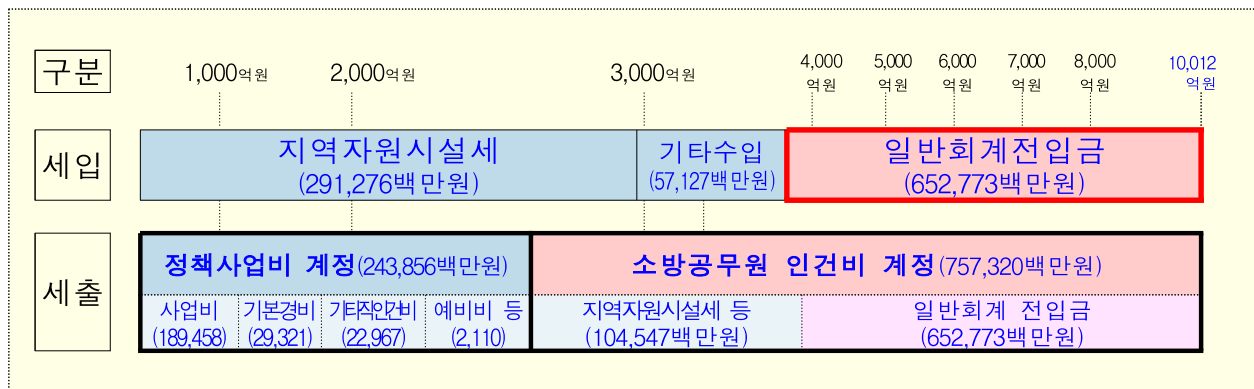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안전 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보전수입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예탁금
291,276 (29.1%)	37,438 (3.7%)	652,773 (65.2%)	13,575 (1.4%)	2,705 (0.3%)	3,054 (0.3%)	355 (0.04%)

○ 세출(순계) : 1,001,17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사업비	기본경비	기타직 인건비	재무활동		예비비
				국고보조금 반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7,320 (75.6%)	189,458 (18.9%)	29,321 (2.9%)	22,967 (2.3%)	195 (0.02%)	850 (0.1%)	1,065 (0.1%)



나. 세입예산안(소방특별회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조 115억 48백 만원 대비 103억 72백 만원(△1.0%) 감액된 1조 11억 76백 만원임.

[표] 세입예산(추경) : 1조 11억 76백 만원 (103억 72백 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세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사유
계	1,001,176	1,011,548	△10,372	
세 외 수 입	2,705	2,705	-	
국 고 보 조 금	3,054	3,054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7,100	6,900	200	노후 소방헬기 교체
보 전 수 입 등	13,575	30,944	△17,369	
잉 여 금	9,051	26,276	△17,225	‘2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
전 년 도 이 월 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9	294	△145	‘24년도 실 국고보조금 잔액 반영
민간융자금회수입 수	4,374	4,374	-	
내 부 거 래	974,742	967,945	6,797	
지역자원시설세	291,276	291,155	121	‘24년도 결산 지역자원시설세 반영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일반수요)	30,338	29,115	1,222	‘25년도 교부 확정액 반영
일반회계전입금	652,773	647,319	5,454	인건비 계정 부족분 전입
예탁금및예수금	355	355	-	

○ 금회 세입예산 편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특수 수요가 필요한 별도 품목(소방헬기, 소방선박)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⁶⁾가 ‘25. 1. 23일 확정통보’⁷⁾됨에 따라 노후 소방헬기(1호기) 교체 예산으로 추가 교부된 2억 원이 증액된 금회 71억 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보전수입 등’에서 173억 69백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⁸⁾이 기정추계예산 262억 76백 만원 대비 172억 25백 만원 감액되어 90억 51백 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 2억 94백만원 대비 1억 45백 만원 감액(1억 49백 만원)에 따른 것임.

6)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소방·안전 대상 사업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9월 30일까지 대규모 재난 대응에 필요한 별도 품목(예: 소방헬기, 대규모 재난 대응 장비 등)을 지정하여 소방안전 사업비의 10% 범위에서 개별 교부하는 재원으로 금년도 서울시로 확정통보(‘25.1.23.) 된 지원대상은 소방헬기(1호기)와 소방선박(서울 702) 등임.

7)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지(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285, 2025.1.23.)

- 분야별 사업비 교부액(불입2, 소방 75% 이상, 안전 25% 이하)을 준수하여 편성 및 집행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 집행(대상사업 외 사용금지)
- (단위 : 천원)

시·도	총 교부액 (A+B)	인건비 (A)	사업비 (B=C+D)	일반수요(C)	특수수요 지원금액(D)					
					합계	소방 헬기	소방정	안전 체험관	보행 환경	안전 사업지구
서울	43,939,496	11,431,928	32,507,568	25,207,568	7,300,000	5,200,000	1,900,000	200,000		

8) ‘2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소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결산잉여금	계(①+②)	기정예산①	제1회 추경②	비고
9,051	9,051	26,276	△17,225	

구분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A-B	이월액(C)	국고보조금 집행잔액(D)	순세계잉여금 (E)=A-B-C-D
2024(예정)	1,026,732	984,820	41,912	15,342	294	26,276
2024(확정)	1,000,667	977,202	23,465	14,265	149	9,051
증감액	△26,065	△7,618	△18,447	△1,077	△145	△17,225

-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25년 예산편성 시 최근 5년간 평균값으로 결산잉여금을 262억 76백 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노후건축물의 잔존가치율이 낮아지고 용도 및 구조 지수 체계가 개편되어 과거 보다 낮은 과세 표준 구간이 적용⁹⁾되었고 이로 인해 추계 대비 세입이 크게 감소된 것임.

9)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2023년 및 2024년 고시 주요 변동 내용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293호, 2023.1.1. 시행)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건축물의 적정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용도지수 체계 개편, 노후건축물의 실질가치 반영을 위한 최종연도의 잔존가치율 하향
2024년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 조정*, 분양형 호텔의 1·2층 가산 적용 제외, 초고층 건축물 층별 가산을 차등 현실화 등 가감산을 지수 개선 * 건축물 최종연도 잔가율을 15%에서 10%로 조정

구분	적용 연도	최종연도 잔가율	상각률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2023년 이전	20%	0.016	1 - (0.016 × 경과연수)
	2023년	15%	0.017	1 - (0.017 × 경과연수)
	2024년	10%	0.018	1 - (0.018 × 경과연수)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2023년 이전	20%	0.020	1 - (0.020 × 경과연수)
	2023년	15%	0.021	1 - (0.021 × 경과연수)
	2024년	10%	0.0225	1 - (0.0225 × 경과연수)

※ 최근 2년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추이 (출처 : 서울시 2023년, 2024년 지방세 연감)

(단위 : 천원)

년도		2023		2024		증감액	
과세표준	세율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600만원이하	10,000분의4	294,894,028	299,063	310,810,286	322,117	15,916,258	23,054
600만원초과1,300만원이하	2,400원+6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5	6,279,765,888	4,018,315	6,694,131,791	4,183,219	414,365,903	164,904
1,300만원초과2,600만원이하	5,900원+1,3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6	25,950,563,293	16,810,002	25,653,224,673	16,662,285	-297,338,620	-117,717
2,600만원초과3,900만원이하	13,700원+2,6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8	26,668,943,315	21,316,301	24,401,867,677	20,060,786	-2,267,075,638	-1,255,515
3,900만원초과6,400만원이하	24,100원+3,9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10	34,068,256,364	33,542,583	30,646,276,201	31,285,901	-3,421,980,163	-2,256,682
6,400만원초과	49,100원+6,4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12	109,132,670,350	251,328,084	96,377,562,796	224,240,549	-12,755,107,554	-27,087,535

- 이로 인해 2025년도 정책사업비 104억 원¹⁰⁾과 인건비 55억 원의 감소로 직결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는 일반회계 추가 전입을 통해 보전하고 정책사업비는 일부 사업에서 감액 편성한 것임.
- 이처럼 세입 추계 오차로 인한 대규모 세출 조정은 사업 집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세입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고 세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전수입등의 ‘전년도이월금’에서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실 집행잔액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 추계 편성액 대비 1억 45백 만원이 감액되었음.
- ‘내부거래’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1억 21백만원 증액되고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일반수요¹¹⁾)는 당초 편성액 대비 확정통보액이 12억 22백 만원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이 54억 54백 만원 증액 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67억 97백 만원이 증액됨.
-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 증액분(1억 21백 만원)은 서울시가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 편성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전망액(2,893억 92백 만원)과 2024년도 최종 확정된 실제 징수액(2,895억 13백 만원) 간에 발생한 차액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정산·보정하면서 발생한 것임.

10) 2025년 소방특별회계 정책사업비 계정 104억 원 부족분 세부 내역

: 순세계잉여금 △11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2억 원 및 일반수요 1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원

11) 소방안전교부세(일반수요) :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와 달리 지자체에서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교부세

-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증액분(54억 54백 만원)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해 인건비 계정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를 보전한 것임.

다. 세출예산안(소방특별회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조 115억 48백 만원 대비 103억 72백 만원(△1.0%) 감액된 1조 11억 76백 만원으로,

[표] 세출예산(추경) : 1조 11억 76백 만원 (103억 72백 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사유
계	1,001,176	1,011,548	△10,372	
행 정 운 영 경 비	809,608	809,608	-	
인 건 비	780,287	780,287	-	
기 본 경 비	29,321	29,321	-	
재 무 활 동	1,045	4,557	△3,5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	4,557	△3,707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감액편성
국고보조금 반납	195	-	195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증액편성
정 책 사 업 비	189,458	196,318	△6,860	'24년 소방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부족분 발생에 따른 본 예산 세출사업 중 공사기간 감소 및 대금 지급비율 조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건의 감액편성과 '25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의 확정 통보로 인한 1건의 증액편성
예 비 비	1,065	1,065	-	

○ 예산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의 변경은 없으며,

- ‘재무활동’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금회 기정예산 45억 57백 만원 대비 37억 7백 만원(81.3%) 감액한 8억 50백 만원을 편성하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납부를 위한 1억 95백 만원을 증액 하였음.

-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소방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에서 예탁·예수하고 있는 제도로 소방 합동청사 건립 등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재정 수요(아래 [표]참조)를 대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

[표] 2025년~2029년 소방특별회계 재정 소요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구분	총 사업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1,249,835	192,694	226,631	242,651	293,111	267,133
1	소방합동청사 건립	179,138	1,163	22,651	37,875	74,770	28,693
2	실화재 훈련장 건립 (국고 13억원 제외)	10,957	6,862	3,624	-	-	-
3	거여 119안전센터 이전	12,248	2,024	4,765	-	-	-

4	도봉선방학교 이전부지 개발 (소교세 100억원 제외)	54,871	-	2,656	7,193	12,607	32,415
5	소방헬기(1호기) 교체 (소교세 150억원 제외)	15,000	2,500	2,500	2,500	-	-
6	선박(702호) 교체 (소교세 40억원 제외)	4,000	1,900	1,900	-	-	-
7	소방차량 교체 보강 (내용연수 교체)	47,979	4,307	8,267	10,820	15,248	9,337
8	개인보호장비 등 보강 (내용연수 교체)	34,735	5,122	6,894	6,208	7,623	8,888
9	기타 경상사업비 (연2.7% 증가 반영)	890,907	168,816	173,374	178,055	182,863	187,800

- ‘정책사업비’에서 ‘24년 소방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부족분 발생에 따른 세출 조정을 위해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119항공대 운영(노후 소방헬기 교체), 수난구조대 운영(노후 소방선박 교체) 등 총 4개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68억 6천 만원을 감액하였음.
- 다만, 119항공대 운영 사업은 자체재원 25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분 2억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23억 원이 순감된 것이 특징임.

1)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별 설명서 p.211)

- 동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일대 위례지구 택지개발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시민 소방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거여119안전센터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20억 24백 만원 대비 14억 76백 만원 (△72.9%) 감액한 5억 48백 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30(위례택지개발지구)
- 사업기간 : '24. 01월~'26. 9월
 - ※ 향후 설계용역 변경기간 반영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재산출 시 총 사업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122억원(시비 122억원 / 토지비 51.3억원, 공사비 등 71,1억원)
- 규 모 : 지상3 / 지하1층, 연면적 1,290㎡, 부지면적 1,500㎡
- 예산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	'25년 기정예산	'25년 추경예산 조정안	'25년 추경예산(안)	증감액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2,023,923	-1,476,412	547,511	△1,476,412

○ 기간변경

구 분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변경전			'24. 10. ~ '25. 3. (5개월)	'25. 5.
변경후	'24. 2. ~ '24. 4.	'24. 7. ~ '24. 10	'24. 10. ~ '25. 7. (9개월)	'25. 10.(예정)

○ 이전 부지 위치도 (송파구 거여동 산30/위례택지개발지구)



위치도



청사 이전 부지



조감도

- 감액 편성 사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 '25.5월 공사 착공을 전제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과업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¹²⁾과

12) □ 추가과업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 사유

: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의뢰부서인 송파소방서가 현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기실 유효폭 확보, △장비보관 공간 확장, △훈련장 및 실내교육장 확보 등을 요청함에 따라 발주처(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를 반영하여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체결('25.2.13.)하면서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당초(24.7.8.~25.3.4.) 대비 60일이 추가(24.7.8.~25.5.3.)

※ 「변경계약 체결 알림(거여 119안전센터 건립 설계용역)」(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991(2025.2.13.))」

BF 인증(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¹³⁾ 절차 지연¹⁴⁾ 등으로 인해 착공 시점이 '25.10월로 늦춰지면서 금년도 내 공사비 집행 가능 기간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비 13억 84백 만원, 감리비 9천 만원, 시설부대비 2백 만원 등에서 총 14억 76백 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 실시설계 변경과 BF 예비인증 심의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간	2024.7.08.~2025.03.04.	2024.7.08.~2025.05.03.	증)60일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4) □ BF 인증절차 지연 사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예비인증 - 본인증) 절차는 당초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5년 1월 개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 등급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종전 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공공건축물의 사전 허가 신청이 단기간에 대거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도 병행 수행 중인 인증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량이 급증함. 이로 인해 BF 예비인증 심의 일정도 함께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인증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임. 또한 예비인증심사 과정에서 추가 발생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과정까지 추가되면서 설계 완료 시점은 당초보다 70일 연장된 2025년 7월 12일로 조정

□ BF 예비인증 추진 경과

- 2025. 1.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신청
- 2025. 3. 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사 개최
- 2025. 4.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사의견서 수령
- 2025. 5.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의 개최
- 2025. 5. 1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의의견서 수령
- 2025. 6.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의 의견 보완 제출(예정)
- ※ 보완내용 접수 후 특이사항 없으면 2주 내 예비인증서 수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결과 및 주요 보완 사항

- 인증심사 결과 : 우수 등급(84.6%) * 우수 등급 기준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 보완 사항 : 입산부 휴게실 추가, 일반화장실 장애인 시설 적용, 복도·출입구·계단 등 장애인 시설 적용
- ※ 「변경계약 체결 알림(거여 119안전센터 건립 설계용역)(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6112(2025.5.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간	2024.7.08.~2025.05.03.	2024.7.08.~2025.07.12.	증)70일

거여119안전센터와 같은 필수 공공안전시설의 경우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공공안전시설인 만큼 보다 면밀한 일정 관리가 요구됨.

2)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사업별 설명서 p.216)

- 동 사업은 서울소방학교 부지 내에 서울 도심의 환경과 최근 화재 양상을 반영하여 특성화된 실화재 훈련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68억 62백만 원 중 공사비(시설비 9억 69백만 원, 감리비 3억 14백만 원)를 포함한 총 12억 84백만 원(△18.7%)이 감액된 55억 7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표]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소방학교 내(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 사업기간 : (변경전) '24. 01월~'26. 5월 ⇒ (변경후) '24. 01월~'26. 12월
- 변경사유 : 훈련시설 보강 및 회복공간 증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기간을 반영, 설계용역 기간 증가로 사업일정이 14개월 증가되었음
- 소요예산 : 123억원(소방특별회계 109.3억원, 국고보조 13.7억원)
- 규 모 : 지상3 / 지하1층, 연면적 1,974㎡, 부지면적 2,750㎡
- 공간구성 : 1개동(5개 훈련장, 훈련상황센터) 및 훈련 부속시설
- 추진일정

구 분	설계공모	실시설계	공사시공	준공 및 시범운영
최초		'24. 4. ~ '24. 9. (6개월)	'24. 10. ~ '25. 9. (12개월)	'25. 10.
변경1	'24. 1. ~ '24. 3.	'24. 5. ~ '25. 2. (10개월)	'25. 3. ~ '26. 4. (14개월)	'26. 5.
변경2 (예정)		'24. 6. ~ '25. 6. (13개월)	'25. 9. ~ '26. 10. (13.5개월)	'26. 11. ~ 12.

※ 실화재 훈련장 세부 공간구성

구분	훈련장(5종)	훈련상황센터	훈련 부속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세부 내역	화재영상, 화재진압, 백드래프트, 자취전술, 복합전술	상황실, 강의실, 세척실	샤워실, 탈의실, 회복실, 목재면료장소, 폐목차량장소	정화시설(집진 및 배면설), 물재용 시설, 산재방지 시설



위치도



조감도

- 감액 사유로는 실화재 훈련장 설계 과정에서 설계경제성(VE) 검토 결과에 따라 구조 형식이 변경(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¹⁵⁾되었고 이로 인한 건축허가(변경)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¹⁶⁾가 발생하면서 착공이 지연(당초 '25.3. → 변경 '25.9.)된 것임.
- 다만,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화염과 연기를 활용한 고강도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필수 시설인 만큼, 향후 설계 보완 및 심의 절차 지연으로 계획된 공사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일정 관리와 사전 대응이 요구됨.

3) 119특수구조단 - 119항공대 운영(사업별 설명서 p.221)

- 동 사업은 항공 구조장비 보강, 교환 부품과 예비부품 등의 확보를 통한 철저한 예방 정비와 청사·격납고 등의 안정적 관리, 소방헬기 정비교육을 통한 항공기 활용능력 향상 등 광역 출동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5) 설계경제성(VE) 검토

□ 추진경과 : 1차 '25.2.5. 2차 '25.2.12. 3차 '25.2.19.

□ 주요 변경 사항

- 실화재 훈련장의 벽체 및 지붕을 경량바깥으로 변경하면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구조로 변경
- 가설공사 시 외지인 출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도로 초입부에만 헬스 사공하도록 수량 축소

16) 실화재 훈련장 건립 설계 용역 행정절차

연번	주요절차	비고	일자
1	계약 체결 및 용역착수		'24.6.3.
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		'24.8.21.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3	건축법(안화) 및 건축허가접수		접수'24.11.8 / 완료'25.1.3.(온라인)
4	설계경제성(VE) 검토(1~3차)	실화재훈련장 구조 변경(철골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1차'25.2.5. 2차'25.2.12 3차'25.2.19
5	설계도면 및 내역 재안출	예상 대비 20일 추가 소요	완료
6	건축허가(변경) 진행	'25.4.30. 접수, 진행 중	진행 중
7	건설기술심의	- 집합주택 서울대동색 10 차세대주택의 단행주택 기준 유지 - 알루미늄 루버는 훈련마당 그늘 제공 및 조류 충돌방지 기능 등으로 기준안 유지 - 안전용으로 기존 보강토양벽 측에 매쉬텐스 산사공	'25.5.16.
8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설계안정검토		진행 중
9	설계도서 최종 납품		'25.6.30.예정

- 당초 기정예산은 총 116억 43백 만원이었으나, 노후 소방헬기(서울 1호기) 교체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2회차 사업비 75억 원(소방안전교부세 50억 원, 자체재원 25억 원) 중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에서 2억 원이 추가 교부¹⁷⁾되어 52억 원으로 증액된 반면, 자체재원은 25억 원 전액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3억 원(△19.8%)이 줄어든 93억 43백 만원이 편성되었음.
- 여기서 자체재원 전액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노후 소방헬기 교체를 위한 금년도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2회차 사업비 75억 원과 전년도 명사이월¹⁸⁾된 1회차 사업비 118억을 합산한 총 193억 원이었으나,
- 2025년 4월 실제 계약 체결 시 과도한 선금 지급은 제조업체(레오나르도)에 협상 주도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어 지급 대금¹⁹⁾을 165억 원으로 하향 설정하였고, 이에 당초 193억 원과 실제 계약액인 165억 원 간의 차액인 28억 원 만큼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 금회 이중 최종적으로 23억 원을 감액 후 기존 계약액 165억 원에 차액 5억 원을 합한 170억 원으로 변경 지급코자 하는 것임.

17) 소방헬기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증액 사유

헬기 교체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입중인 서울 소방 1호기의 경우 중형급 헬기 기준금액(300억 원)의 50%인 150억 원을 3개년(2024~2026)에 걸쳐 각각 50억 원씩 나누어 교부됨. 2024년도에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이 조정되면서 서울에 배정된 소방헬기 교부액 50억 원 중 43억 원만 교부되어 7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그 중 일부인 2억 원이 보전 교부됨.

18) 2024년도(1회차) 헬기 교체사업비 118억 원 명사이월 사유

소방헬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 입찰 결과 두 차례 유찰되었고, 이에 「노후 서울소방 1호기 헬기 교체 변경계획(행정2부시장 제222호 방침)」을 수립하여 규격조장과 사업추진 일정을 통해 1회차 사업비 118억 원을 명사이월함.

19) 소방헬기 대금 지급 조건 변경(안) 내역(제조사 레오나르도와 협의)

(단위:백만원)

원 안				변 경(안)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30,000	16,500	4,500	9,000	30,000	17,000	5,500	7,500
	선금+가성금 (40%+15%)	2차 가성비금 (15%)	잔 금 (30%)				

- 이는 당초 계약된 1차 지급분(165억 원) 보다 금년에 5억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추후 지급 잔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을 일부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1차 지급분의 증액이 제조업체(레오나르도)와의 협상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되고, 금년도 본 예산 편성 당시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표] 노후 소방헬기 교체 사업 개요

- 사업명 : 노후 소방헬기 교체
- 사업목적
 - 경제수명(20년) 경과 노후 소방헬기(서울001호) 교체 사업
 - 비행 안전성 확보, 중증환자 이송인명구조화재진압 등 다양한 재난 대응에 적합한 다목적 헬기로 교체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4년)
 - ※ '24. 상반기 총 2회 압찰결과 모두 무응찰로 유찰되어 사업기간 변경 '24년'26년(3년)→'24년'27년(4년)
- 사업규모 : 중형급(14~20인 탑승) 소방헬기 1대 신규 도입
- 사업비 : 3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150억 지원)
 - ※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정한 사도에 대해 소방헬기 구입시 기준금액(중형 300억, 대형 500억)에서 실제사업비용 50% 분할 지원
- 교체 대상 헬기

	헬기명	모델명	탑승	담수량	도입일
	서울소방 001호기	AS365N2 (에어버스/프랑스)	14명	900 ℓ	1997.9.10 (28년 경과)

○ 신규 도입 헬기

	모델명	제작사	국내 대행사	형식 증명
	AW-139	레오나르도社 (이탈리아)	유아이 인터내셔널	유럽항공안전청 (EASA)
	탑승인원	최대 항속거리	최대 이륙중량	최대 순항속도
	14인 (조종사 2인 포함)	500km 이상	5,700kg 이상	240km/h 이상

○ 연도별 사업예산

(단위:억원)

총 사업비	재원 구분	금액	연차별 집행 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18	52	55	75
300	소방안전교부세	150	43 (명시이월)	52	55	-
	자체재원(시비)	150	75 (명시이월)	-	-	75

4) 119특수구조단 - 수난구조대 운영(사업별 설명서 p.226)

○ 동 사업은 노후 소방선박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 건조, 수난구조 장비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소방 선박과 청사(바지선)의 안전도 검사 및 선제적 보수·보강을 통해 감항능력²⁰⁾을 확보함으로써 상시 비상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47억 34백 만원 대비 18억 원(38%) 감액한 29억 34백 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사유는 노후 소방선박(서울 702호)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 건조비 중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 연차별 대금지급 비율²¹⁾을 조정하면서 당초 '25년도에 투입 예정이던 총 38억 원 중 소방안전교부세 19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제외한 자체재원 18억 원(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억 원, 감리비 1억 원)을 감액한 것임.

- 다만, 특수수난구조대에서 운영중인 서울 702호는 1998년도에 도입된 24톤급 소방정(강선)²²⁾으로 내용연수²³⁾ 20년을 초과(27년 경과)된 만큼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건조 단계에서 일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0) 감항능력(Anti-Seaworthiness) : 선박이 기상 및 해양 환경에 안전하게 적응하여 운항할 수 있는 능력

21) 선박 건조 제안 요청서와 감리 규격서에 '25년 추경예산(안)을 반영하여 대금 지급 비율 선금(25%), 중도금(50%), 잔금(25%) 명시함.

(단위:백만원)

	합 계	2024년(완수)	2025년(진행)	2026년(예정)
합 계	8,000	400	2,000	5,600
소 교 세	400	200(설계)	1,900(건조)	1,900(건조)
자체재원	400	200(설계)	100(감리)	3,400(건조) 300(감리)

22)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2조(정의)

6. "소방선박"이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으로 지휘정, 구조정, 소방정, 구조보트 등을 말한다.

가. "소방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운용중인 선박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화재·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23)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 연수 기준(다. 소방선박(중분류03))

[표] 노후 소방선박 교체 사업 개요

- 사업명: 노후 소방선박 교체
- 사업목적:
 - 내용연수(20년) 경과 노후 소방선박(서울702호)을 대체할 다목적 소방정 건조 사업
 - 노후화로 인한 운행 불가 수준의 심각한 부식 등에 따른 신규 소방선박 도입 필요
 - 소방 선박 운항 안전설비의 노후 및 부재로 위험성 상존
 - 안전설비 장착을 통한 외항운행(출동·검사·정비) 제약 해소 및 야간 운행
 - * 선박위치발신장치, 레이더, GPS, 음파탐지기, 무선통신설비 등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 사업규모 : 50톤급 소방정 1척 도입
 - 엔진성능 25kts(약46km/h), 소방펌프 500m³/h, 크레인 인양 능력 1톤 수준으로 상향
- 사업비 : 8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40억 지원)
 - ※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된 시·도에 소방선박 건조 시, 기준금액(150톤급 200억, 50톤급 80억) 내에서 실제사업 비용 50% 분할 지원
- 교체 대상 선박

서울702호	진수일	제작사	건조금액	톤 수	엔진
	1998.10.23. (25년 경과)	동진조선	899,250천원	24톤 (승선 21명)	디젤 680HP ×2기

- 기존 24톤급 선박(서울702호) 대비 신규 도입 선박 제원

소방선박 성능	엔진 성능	소방펌프 능력	크레인 인양능력
기존선박 노후도	17kts(31.5km/h)→12kts(22km/h) (30% 저하)	180m³/h→130m³/h (30% 저하)	0.5톤→0.4톤 (20% 저하)
신규선박 성능표	25kts(46.3km/h)	500m³/h	1.0톤

- 연도별 사업예산

(단위:억원)

총 사업비	재원 구분	금액	연차별 집행 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4	20	56
80	소방안전교부세	40	2(설계)	19(건조)	19(건조)
	자체재원(시비)	40	2(설계)	1(감리)	34(건조) 3(감리)

소분류	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방정】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01)			
	【소방정】 (01)		20
			15
【구조정】 수상에서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5톤이상의 선박(02)			
	【구조정】 (01)		20
			15
【지휘정】 수상재난에서 지휘를 주임무로 하는 선박(03)			
	【지휘정】 (01)		20
			15
【구조보트 등】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선박(04)		강선 20년 FRP선 15년	
	【구조보트】 5톤미만(01)		20
			15
	【고속구조보트】 25 knots 이상(02)		7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소형 수상 원동기(03)		7
	【고무보트】 고무재질로 된 공기주입형 보트(04)		7
	【공기부양정】 부양공기로 운항하는 선박(05)		10